

## 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(CA유통지원) 사업 모집공고

신선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물류에서 CA기술을 활용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4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(CA유통지원)」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1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

### 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4개 업체 내외
-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
- 지원대상 : 수출통합조직(통합·선도단계)\*, APC 운영사 등 전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있고,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수출·물류업체

\* 2024년 기준 통합단계(12개) : 파프리카, 버섯류, 딸기, 포도, 절화류, 배, 토마토, 감귤, 단감, 키위, 월동무, 배추류 / 선도단계(4개) : 사과, 마늘, 복숭아, 아스파라거스

- 지원내용 : <sup>1)</sup>CA저장고 개보수, <sup>2)</sup>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구축, <sup>3)</sup>질소발생기(고정식 및 이동식) 구입 및 설치 지원(국비70%)

〈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기준 〉

지원항목	지원내용	지원규모	지원한도(총사업비 기준)
CA저장고	▶ CA저장고 개보수 비용 등	130㎡	최대 3백만원/㎡
CA컨테이너 전용상하차	▶ CA전용 상하차 도크·데크공사 및 캐노피 설치 등	2문까지	최대 50백만원/문
질소발생기	▶ (고정식) 질소발생기 구입·설치비 ▶ (이동식) 차량제외한 구입·설치비	1식까지	최대 100백만원/식

\* 지원업체는 1~3번 중 수요에 맞게 자율선택(중복선택·지원가능)

- 문의처 : aT 수출성장지원부(061-931-0837, 061-931-0838)

## 2

#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4.3.7.(목) 23:59까지 \* 예산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 가능
- 신청방법 : aT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제출서류
  - 사업신청서·계획서, 토지·건축물 대장, 등기부등본(토지·건물) 개인 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표준재무제표증명(3개년) 각 1부
- 제출처 : aT 수출성장지원부(ssy731@at.or.kr, jomingyeongk@at.or.kr)

## 3

### 선정기준 및 방법

- 선정방법 : 신청업체 대상 『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』를 통해 사업 계획서 등 평가 후 사업자 선정
  -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지원항목 및 한도 설정
- 컨설팅 수행 : 선정업체 대상 『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(CA유통지원) 컨설팅 심의위원회』 위원을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CA설비 구축 컨설팅 수행(aT부담)

## 4

### 정산방법 및 제출서류

- 정산방법 : 기한 내 정산요건 증빙 제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 및 한도내 지원(先지출, 後정산)
  - 정산요건 : ①9월까지 CA설비 구축완료, ②11월까지 구축완료 설비를 통한 CA수출(부득이한 경우 aT 사전승인 시 연내 범위에서 기한연장 가능)
- \* 원본대조필 날인 후 aT 담당자에게 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
- 제출서류 : 사업약정서 상 <세부 정산기준 참고>

□ (정산보고) 사업비(보조금)를 1억원 이상 수령하는 업체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검증 확인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T로 제출

\* 근거법령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(정산보고서의 검증)

□ (사후관리) 근거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투입된 부동산 및 종물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(중요재산) 취득 시 지원업체는 보조금통합관리망(e-나라도움)에 가입하여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된 중요재산 목록을 등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aT(지역본부)로 보고하여야 하며, 정부지원 취득 시설물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

\* 근거법령 :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0조(중요재산의 등록 등)